## KOSHA GUIDE

## C - 94 - 2013

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사용하고, 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

- (7) 충전전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비계 설치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자재 하역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.
- (9)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및 용단 작업장소에는 소화기,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10) 자재의 반입은 사용순서 및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간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반입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치장소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- (11)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, 재사용 가설기 자재는 변형, 부식 또는 손상상태 등이 재사용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12)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13)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 등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14)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낙하 우려가 있는 재료, 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.
- (15) 장비의 진출입로 및 작업장소는 작업 중 장비의 넘어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16) 천공 및 항타기를 조립·해체·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 정하여 지휘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7) 자재 인양 시 인양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